

HPP 법의 VAT 개정에 대한 시행령

2022년 3월 30일 재무부(MoF)는 HPP(Harmonisasi Peraturan Perpajakan)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VAT) 변경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여러 시행령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재무부 규정은 주로 2022년 4월 1일자로 11%로 인상되는 부가세율(2025년부터 12%로 인상)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동 텍스플래쉬는 시행령을 다룬 첫번째 텍스플래쉬이며, 타 재무부 규정의 변경사항은 지속적으로 텍스플래쉬를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HPP법의 최초 협의에 대하여는 [TaxFlash No.20/20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전자상거래 (Foreign e-commerce)

해외 전자상거래 공급에 대한 VAT 매커니즘은 Law No.2 Year 2020 및 해당 시행 규정(PMK-48¹ 및 PER-12²)에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MoF 는 VAT 과세거래의 범위, 부가세 징수자에 대한 이커머스 규정 및 부가세 의무이행(예: 등록, 납부)에 대한 재무부령 No.PMK-60³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큰 관점에서 PMK-48 및 PER-12([TaxFlash No.09/2020](#), [TaxFlash No.21/2020](#), 및 [TaxFlash No.26/2020](#) 참조) 동일하며, 주요한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Implementing rules for VAT changes under the HPP Law ^{P1}

Foreign e-Commerce ^{P1}

The use of "Other Value" for the VAT imposition base ^{P2}

Certain LPG products ^{P2}

Tobacco products ^{P3}

Subsidised fertiliser for the agricultural sectors ^{P4}

Non-VATable goods and services that are subject to Regional Taxes ^{P4}

Food and beverage ^{P5}

Catering services ^{P5}

Art and entertainment services ^{P5}

Hotel services ^{P5}

Parking services ^{P5}

¹ MoF Regulation No.48/PMK.03/2020 (PMK-48) dated on 5 May 2020 and effective from 1 July 2020

² Director General of Taxes (DGT) Regulation No.PER-12/PJ/2020 (PER-12) dated on 25 June 2020 and effective from 1 July 2020. PER-12 remain valid as long as it does not contradict with PMK-60.

³ MoF Regulation No.60/PMK.03/2022 (PMK-60) dated on 30 March 2022 and effective from 1 April 2022. PMK-60 revokes PMK-48.

PMK-60은 해외 이커머스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세율이 현행 부가세율과 동일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PMK-60은 해외 이커머스의 부가세 과세대상 기업(*Pengusaha Kena Pajak/PKP*)의 지정과 관련하여 PMK-48 및 PER-12의 규정이 신규 재무부 규칙이 발표될 때까지 유효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PMK-60은 해외 또는 국내 이커머스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인도네시아에서 해외 공급자와 인도네시아 내 사용자 간의 거래에 대한 VAT는 해외 이커머스 공급자 또는 국내 이커머스 마켓플레이스에서 징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을 근거로 해외 이커머스 공급자 및 국내 이커머스 마켓플레이스는 이커머스 부가세 징수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커머셜 인보이스, 빌링, 주문확인서 또는 유사한 서류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VAT 신고

이커머스 부가세 징수자는 반드시 하기의 정보를 포함한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a) 인도네시아 내 사용자 수;
- b) 부가세를 제외한 지급금액;
- c) 징수된 부가세 금액;
- d) 최소한 아래의 정보를 포함하는 부가세 거래의 세부사항: – **신규**
 - 1. 각각의 부가세 징수고지서(slip)의 번호 및 일자;
 - 2. 각각의 부가세 징수고지서에 대한 지급금액(부가세 제외);
 - 3. 각각의 부가세 징수고지서에 대한 부가세 징수금액;
 - 4. 부가세 징수고지서에 정보가 포함된 경우, 인도네시아 내 사용자의 이름 및 세무등록번호.

기존에는 DGT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징수된 VAT 거래에 대한 세부 정보의 제출의무가 있었습니다. PMK-60에 따라, DGT는 DGT의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세부 정보를 여전히 요청할 수 있으나, 상기 d)의 항목은 부가세 납부 금액으로 대체됩니다.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기타 가액”을 사용하는 경우(*Dasar Pengenaan Pajak/DPP Nilai Lain*)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기타 가액"의 사용은 부가세법 8A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규 재무부 규정 중 세 개의 규정은 특정 액화석유가스 제품, 담배제품 및 농업분야의 정부 보조 비료에 대하여 부가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A. 특정 액화석유가스(LPG) 제품

재무부 규정 No.PMK-62⁴는 보조금을 받지 않는 LPG 제품에 대한 부가세 계산 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LPG 제품의 공급에 대한 부가세는 PMK-220⁵에 도입되었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부분(즉, 정부가 부담하는 부가세) 및 보조금을 받지 않는 부분(즉: 고객이 부담하는 부가세), 부가세 의무 및 매입부가세 공제에 대한 PMK-62의 조항은 PMK-220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TaxFlash No.01/2021](#) 참조). PMK-62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 과세표준으로써 "기타 가액(Other Value)"의 사용은 정부가 지정한 법인이 공급하는 시점에만 적용됩니다. 반면, 유통 에이전트 또는 하위의 유통 에이전트가 공급하는 시점에는 "최종부가세(Final VAT)"를 적용합니다.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기타 가액"의 적용

정부가 지정한 법인이 배송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이 되는 "기타 가액"은 소매 판매 가격의 $100/(100+t)$ 입니다. 여기에서 't'는 일반적인 부가세율을 의미합니다. 부가세 납부액은 부가세율에 "기타 가액(Other Value)"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Final VAT

일반 부가세율에 지정된 백분율을 곱하여 최종적으로 유효한 Final VAT 세율을 산출합니다. Final VAT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1.1/101.1 (2022년 4월 1일부터)
- b) 1.2/101.2 (12% VAT 세율이 발효되는 시점부터 적용)

여기에 유통 에이전트 또는 하위 유통 에이전트의 마진을 곱합니다(즉, 마진은 VAT 과세표준으로 간주됨)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규정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정부 지정 법인의 공급과 관련된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지만, 유통 에이전트 또는 하위 유통 에이전트의 공급과 관련된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B. 담배 제품

재무부 규정 No.PMK-63⁶은 담배 제품에 대한 납부할 부가세를 계산시 사용되는 부가세율을 신규로 발표하였으며, 기타 다른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⁴ MoF Regulation No.62/PMK.03/2022 (PMK-62) dated on 30 March 2022 and effective from 1 April 2022. PMK-62 revokes PMK-220.

⁵ MoF Regulation No.220/PMK.03/2020 (PMK-220) dated and effective from 28 December 2020

⁶ MoF Regulation No.63/PMK.03/2022 (PMK-63) dated on 30 March 2022 and effective from 1 April 2022. PMK-63 revokes PMK-174 as lastly amended by PMK-207.

담배 제품 공급에 대한 부가세는 PMK-174⁷에서 도입되었습니다. 부가세 의무 및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조항은 PMK-174 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TaxFlash No.26/2015](#) 참조). PMK-63 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기타 가액"의 적용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 의한 공급의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적용되는 "기타 가액"은 소매 판매 가격의 $100/(100+t)$ 입니다. 여기에서 't'는 일반적인 VAT 세율을 의미합니다. 부가세 납부액은 부가세율에 "기타 가액"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PMK-63 은 해당 부가세율 및 "기타 가액"에 따라 담배 제품 공급에 대한 부가세를 반올림하여 다음과 같이 과세하도록 규정합니다:

- a) 2022 년 4 월 1 일부터 공급되는 담배제품의 경우 소매 판매 가격의 9.9%;
- b) 12%의 부가세율이 적용되는 시점부터는 소매 판매 가격의 10.7%.

기타 규정

- a) 부가세는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담배제품을 공급하는 시점에만 징수됩니다;
- b) 담배제품을 타 유통업자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유통업자는 부가세를 징수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 c) 담배제품만을 공급하는 유통업자는 PKP 를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규정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나, 유통업체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C. 농업분야 정부 보조 비료

재무부 규정 No.PMK-66⁸ 은 보조금을 받는 비료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 기준을 개정하고, 기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비료 공급에 대한 부가세는 PMK-62/2015⁹에서 도입되었습니다. 부가세의무 및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PMK-66 조항은 PMK-62/2015 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TaxFlash No.12/2015](#) 참조). PMK-66 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⁷ MoF Regulation No.174/PMK.03/2015 (PMK-174) as lastly amended by MoF Regulation No.207/PMK.010/2016 (PMK-207)

⁸ MoF Regulation No.66/PMK.03/2022 (PMK-66) dated on 30 March 2022 and effective from 1 April 2022. PMK-66 revokes PMK-62/2015.

⁹ MoF Regulation No.62/PMK.03/2015 (PMK-62/2015) dated on 26 March 2015 and effective from 25 April 2015

보조금 지원 비료 공급에 대한 부가세는 부가세율에 "기타 가액(Other Value)"(VAT 과세표준)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기타 가액"의 적용

비료에 대한 "기타 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100/(100+t) \times \text{보조금 지급액(부가세 포함)}\}$ 에 따라 계산된 보조금 부분;
- b) $\{100/(100+t) \times \text{최고 소매 가격}\}$ 에 따라 계산된 비보조 부분.

여기서 't'는 현행 부가세율입니다.

기타 규정

- a) 부가세는 보조금을 받는 비료가 공급되는 시점에 생산자에 의해서만 징수됩니다.
- b)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유통업자 또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소매업자는 부가세를 징수하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c) 보조금을 받는 비료만 제공하는 유통업자와 소매업자는 PKP 를 등록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생산자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나, 유통업자 및 소매업자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지방세가 과세대상인 부가세 비과세 대상 재화 및 용역

재무부 규정 No.PMK-70¹⁰은 부가세 비과세 대상인 음식 및 음료("F&B"), 케이터링 서비스,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호텔 서비스 및 주차 서비스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상기와 같은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이미 지방세가 과세되고 있으므로 부가세 면제를 통해 이중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음식 및 음료

여기에는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제공되는 식음료(식사 또는 테이크아웃) 및 케이터링 서비스에 따라 제공되는 식음료가 포함됩니다. 레스토랑은 테이블, 의자, 식기와 같은 식사 관련 필요 시설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¹⁰ MoF Regulation No.70/PMK.03/2022 (PMK-70) dated on 30 March 2022 and effective from 1 April 2022

케이atering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 a) 고객 주문에 따라 재료 조달, 준비, 보관 및 제공
- b) 재료를 준비하거나 보관한 장소가 아닌 고객이 지시한 다른 장소에서 서빙
- c) 식기 등의 유무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

F&B 공장, 공항 라운지, 슈퍼마켓 등에서 제공하는 F&B(F&B 만 판매하지 않음)는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B. 케이atering 서비스

부가세 면제 대상 케이atering 서비스에 대한 요건은 상기와 동일합니다.

C.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PMK-70 은 12 가지 유형의 부가세 면제 대상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용 게임 공간과 장비를 갖춘 전시회, 예술 공연 및 게임 스포츠가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은 부가세 면제 대상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에서 제외됩니다.

- a) 골프장 및 골프장비 제공;
- b) 인터넷 또는 전자 채널을 통한 영화 또는 기타 시청각 스트리밍 제공.

D. 호텔 서비스

부가세 면제 대상 호텔 서비스는 호텔, 빌라, 리조트 등의 객실 또는 공간 임대와 관련된 서비스입니다. 객실 임대에는 숙박 및 룸 서비스, 엑스트라 베드, 세탁, 스포츠 시설, 호텔 교통편과 같은 부대 시설이 포함됩니다. 행사 또는 회의를 위한 호텔 공간 임대도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기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제 대상 호텔 서비스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a) 행사나 회의를 위한 호텔 공간 임대 이외 ATM, 사무실, 은행 시설 등의 임대;
- b) 일반적인 호텔 서비스와 구별되는 아파트, 콘도미니엄 등의 단위 또는 공간 임대(관련 시설 포함);
- c) 호텔 경영진이 제공하는 여행 서비스.

E. 주차 서비스

부가세 면제 대상 주차 서비스는 주차 공간 제공 및 발레파킹 서비스입니다. 주차 공간 소유자에게 유료로 제공되는 주차 공간 관리 서비스는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Your PwC Indonesia Contacts:

Abdullah Azis
abdullah.azis@pwc.com

Hasan Chandra
hasan.chandra@pwc.com

Runi Tusita
runi.tusita@pwc.com

Adi Poernomo
adi.poernomo@pwc.com

Hendra Lie
hendra.lie@pwc.com

Ryuji Sugawara
ryuji.sugawara@pwc.com

Adi Pratikto
adi.pratikto@pwc.com

Hisni Jesica
hisni.jesica@pwc.com

Soeryo Adjie
soeryo.adjie@pwc.com

Alexander Lukito
alexander.lukito@pwc.com

Hyang Augustiana
hyang.augustiana@pwc.com

Sujadi Lee
sujadi.lee@pwc.com

Ali Widodo
ali.widodo@pwc.com

Kianwei Chong
kianwei.chong@pwc.com

Sukma Alam
sukma.alam-c@pwc.com

Amit Sharma
amit.xz.sharma@pwc.com

Lukman Budiman
lukman.budiman@pwc.com

Surendro Supriyadi
surendro.supriyadi-c@pwc.com

Andrias Hendrik
andrias.hendrik@pwc.com

Mardianto
mardianto.mardianto@pwc.com

Susetiyo Putranto
susetiyo.putranto@pwc.com

Anton Manik
anton.a.manik@pwc.com

Margie Margaret
margie.margaret@pwc.com

Sutrisno Ali
sutrisno.ali@pwc.com

Antonius Sanyojaya
antonius.sanyojaya@pwc.com

Marlina Kamal
marlina.kamal@pwc.com

Suyanti Halim
suyanti.halim@pwc.com

Avinash Rao
a.rao@pwc.com

Nicholas Sugito
nicholas.sugito@pwc.com

Tim Watson
tim.robert.watson@pwc.com

Ay Tjhing Phan
ay.tjhing.phan@pwc.com

Nikolas Handradjid
nikolas.handradjid@pwc.com

Tjen She Siung
tjen.she.siung@pwc.com

Brian Arnold
brian.arnold@pwc.com

Oki Octabiyanto
oki.octabiyanto@pwc.com

Turino Suyatman
turino.suyatman@pwc.com

Dexter Pagayonan
dexter.pagayonan@pwc.com

Omar Abdulkadir
omar.abdulkadir@pwc.com

Yessy Anggraini
yessy.anggraini@pwc.com

Enna Budiman
enna.budiman@pwc.com

Otto Sumaryoto
otto.sumaryoto@pwc.com

Yuliana Kurniadjaja
yuliana.kurniadjaja@pwc.com

Gadis Nurhidayah
gadis.nurhidayah@pwc.com

Peter Hohtoulas
peter.hohtoulas@pwc.com

Yunita Wahadaniah
yunita.wahadaniah@pwc.com

Gerardus Mahendra
gerardus.mahendra@pwc.com

Raemon Utama
raemon.utama@pwc.com

www.pwc.com/id

 PwC Indonesia

 @PwC_Indonesia

If you would like to be removed from this mailing list, please reply and write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 or send an email to id_contactus@pwc.com.

DISCLAIMER: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22 PT Prima Wahana Caraka.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Indonesian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